

불법 피라미드 판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나 각 시·도 단단계판매 담당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02-538-4117

관련 기관 및 시·도별 담당 부서		
구분	담당 부서	전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 특수거래과	02-2023-4337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02-3440-9657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소비자과	051-4600-1033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062-975-8818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비자과	042-478-1348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소비자과	053-742-9148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남담당실	02-2023-4010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팀	02-3701-8114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4218
부산광역시	유통소비과	051-699-3843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603-3211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042-600-3362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062-615-3770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92
경기도	경제정책과	031-249-4591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030-248-2867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0-220-3223
충남도	경제정책실	040-261-2882
전라북도	경제정책과	063-280-3214
전라남도	경제정책과	061-288-3323
경상북도	경제교류정책과	053-950-2793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055-211-262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374
경찰청	수사과	02-3150-2266
한국소비자원		02-3480-3000
한국직접판매협회		02-538-4117
직접판매규제국립		02-596-1202
한국특수판매규제조합		02-2098-0931
지출분쟁조정위원회		02-774-4194
독서소비자연대		02-5273-717
서울 YMCA 시민봉사실		02-733-3188



# C o n t e n t s

## 합법적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 03 합법적 다단계판매란?  
합법적 다단계판매의 특징  
불법 피라미드 신고
- 04 합법적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의 차이점
- 05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

## 피해사례

- 06 교수익분당 아르바이트 제공
- 07 병역특례·취업제공
- 08 학자금 대출권유
- 09 빈봉황하의 경우

## 피해예방

- 10 대학생 피해 예방 요령
- 11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 12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대책

## 기관소개

- 14 공정거래위원회
- 15 (사)한국직접판매협회



## 합법적 다단계판매란?

소비자가 스스로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이러한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위판매원과 하위판매원 사이에 3단계 이상의 단계가 형성되는 판매방식입니다.

- ◎ **다단계판매** :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유통회사가 중간 유통과정(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함으로써 유통마진을 절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를 가진 “직접판매방식”의 한 부류

## 합법적 다단계판매의 특징

합법적 다단계판매는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을 소개, 판매한 대가로 그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 제공
-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
- 부업기회 제공
- 자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  
가격이 저렴해지지요~”



## 불법 피라미드 신고

불법피라미드 조직을 알고 계시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 경찰관서, 소비자단체, 협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02-538-4117 ]**

## 합법적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의 차이점

다단계판매는 외형 구조상 불법 피라미드 조직과 구별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가 사람 장사로 이익을 얻는 피라미드업체로 변질되지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구분	다 단계 판매 (합법)	피 라 미 드 판매 (불법)
적 법 성	합법 (행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불법
가 입 비 용	연간 1만원 미만의 입학비 또는 무료	가입비, 교육비, 상품 및 재고 구매비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초기 가입비용 강요
상 품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소비자재	자질외 고가 제품
업 무 구 조	초기 부업 출발 유도	초기부터 전업으로 사업하도록 강요
물 건 전 달	주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	판매원이 판매 및 전달과정에서 직접 물건을 개봉 훼손
사 업 성 격	장기적 차원의 사업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
사 업 실 명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공개된 장소	배타·폐쇄·인위적 구조로 강압적인 방식 진행, 공동수수에 목욕여 사업진행
후 원 수 당	장기적 성과급, 본인의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교육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지급 기준	단기간에 손쉽게 돈을 버는 판매방식, 새로운 회원모집을 통해서만 수당이 지급됨
구 매 유 도	상품구매는 자유의사	판매원 등록시 일정량의 상품구입, 월별 강제구매의 설정, 승급을 빌미로 강제구매 유도
수 익 원	제품판매로 수익발생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자체로 수익발생
재 고 부 담	재고부담의 강요 없음	강제·의도적 재고부담 규정
확 장 구 조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없음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부과
환 불	환불규정명시	소비자나 판매원에 대한 환불규정 불이행, 재고 상품 반환규정 없음
피 해 보 상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 가능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불가능

##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

### ◎ 유인단계

-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
- 고수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
-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 함께 여행, 좋은 공연을 가지고 교육장까지 유인한다.

“취업·병역특례 소개”



### ◎ 교육단계

- 교육장에 온 사람들은 행운아이며, 남들이 가입하기전에 빨리 가입하여 상위판매원이 되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 가입 및 물건 구입을 종용한다.
- 돈을 많이 벌었다는 판매원이 나와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고 성공담을 이야기 하면서 만원을 투자하면 수개월 후 부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내세워 사재기, 강제구매를 유도한다.
- 교육은 다소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전화 걸 때,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에도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든다.
- 처음에는 자신들의 판매방식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며칠만 참고 교육을 받으면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다며, 사람 유인하는 방법, 투자금액 미련환(학자금 대출, 방세, 사고처리비용 등) 등 거짓말 시나리오에 대해서 교육한다.
- 합숙, 점진방을 이용한 숙박을 종용한다.

### ◎ 활동단계

- 조직이탈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상위 판매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강요한다.
- 청약철회 방해해 목적으로 판매원이 직접 물건을 개봉해 훼손함으로써 반품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품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물건을 상위사업자가 보관해 반품을 방해한다.

피해사례 1 ⇨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제공

글·그림 신경우



월급 500만원, 1000만원 등을 보장받



피해사례 2 ⇨ 병역특례·취업제공

글·그림 신경우



피해사례 3 ⇨ 학자금 대출권유

글·그림 신경무



피해사례 4 ⇨ 반품방해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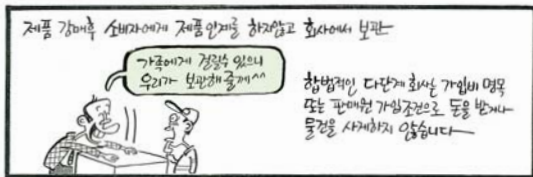
글·그림 신경무



권유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권유자에게 돈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제품이 문제없다면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이내 반품이 가능하지만 피해보상에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 판매원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인 가입비 명목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물건을 사게하지 않습니다

## 대학생 피해 예방 요령

### ◎ 고수의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았을 경우

1. 해당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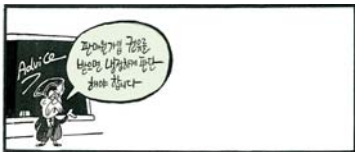
➔ 권유받은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권유자에게 해당회사의 상호·본점 소재지, 판매원 모집 방법 및 판매방식 등의 정보를 물어 볼 것

2.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일 경우 해당 회사의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 해당 회사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이면 제의를 거절해야 하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직접 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imurion.or.kr)를 통해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

4.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 나올 것



### ◎ 학자금 대출 권유의 경우

1. 제품 구입전에 자신의 금전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
2.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제품 구입시,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것

### ◎ 반품 방해의 경우

1.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법정 기한 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

### ◎ 특히 조심해야되는 경우

1. 설문조사를 부탁하며 접근하는 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설문조사를 인용하여 소비자에게 교재를 발송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텔레마케터(전화권유판매원)의 감언이설을 주의  
➔ 감언이설 상당수가 판매를 하기 위한 거짓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결정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3. 무료 사은품 행사 주의  
➔ 판매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 수칙1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한다
- 수칙2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 수칙3 공제번호를 확인한다
- 수칙4 다단계판매원 수칙 내용을 확인한다
- 수칙5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다
- 수칙6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대책

### ◎ 다단계판매를 권유받았을 경우

-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는 정보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상품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적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분포를 확인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경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제번호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원은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현금금액은 아래의 같습니다.
  - ▶ 공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약철회의 경우 대금전액
  - ▶ 공금일로부터 1개월~2개월 이내 청약철회의 경우 대금의 5%를 공제한 금액 이상으로 약정한 금액
  - ▶ 공금일로부터 2개월~3개월 이내 청약철회의 경우 대금의 7%를 공제한 금액으로서의 약정한 금액
  - ▶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영업일 이내에 현금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연리24%)를 가산한 금액을 현금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입한 제품 환불 받고 싶을 경우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구입한 제품을 환불받고 싶을 때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두 곳이 있으며 대상 업체가 어느 쪽에 가입돼 있는지 살펴보고 공제번호를 확인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청약철회기간	다단계판매원일 경우	일반 소비자일 경우
	3개월 이내	14일 이내

### ◎ 다단계판매원으로 탈퇴하고 싶을 경우

- 탈퇴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다단계판매체에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회사측은 어떤 명목으로도 판매원 탈퇴를 막을 수 없으며 막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될 다단계판매 법적사항

#### 1) 다단계판매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상한제

다단계판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품의 상한선을 제한하여 1인당 발생 가능한 고액 피해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 가격은 130만원이 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함).

#### 2)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비율

현행법은 매출의 35% 이내로 후원수당 지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명목 외에 회원모집활동에 대한 각종 포상이나 교육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해당됩니다.

#### 3)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 4) 다단계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되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됩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할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중에 미성년자를 가입시켜서는 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시장경제육진, 소비자주권확립, 중소기업경쟁기반 확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 [특수거래과]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분야의 소비자 보호 사책 수립, 진행
- 공제조합에 관한 사책의 수립, 시행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 운용
-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 교육 및 홍보
- 특수판매 분야의 상사감시체제 구축 및 운용 등



KDSA

대한민국직접판매협회

www.kdsa.or.kr

1988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거래의 건전화를 유도, 국민 소비생활의 이익 및 편리 증진과 경제발전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1992년 11월 상공부 장관(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발족되었습니다.

#### [주요업무]

1.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세미나 개최
2. 업계 판매증사자 지도, 교육 및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3. 회원의 권익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접수
4. 소비자 고발창구 운영
  - (1) 소비자상담실 : 소비자상담 및 고발창구 운영
  - (2) 소비자 분쟁 조정·처리
5. 국내 업계환경 조사 및 통계
6. 직접판매세계연맹을 통해 전 세계 59개국과의 정보교환 업무